

2022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계획

1 교육기간

- 2022.09.07.(수) ~ 12. 28.(수), 각 교육당 50명 이내 운영(4시간)

※ 신청관련 문의사항: 02)-3472-1389

2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3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4 신청 및 교육방법

1) 신청방법

-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 노인인권교육 신청 → 시·도 및 시·군·구 선택(기관이 소속된 지역으로 선택)
 - ③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 중’ 버튼 클릭
 - ④ 신청기관명 및 주소, 신청자 이름&생년월일 등 입력
 - ⑤ 교육 당일 신청한 교육일의 교육장소에 참석 혹은 (비대면교육의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
 - ⑥ 교육 종료 7일 후 교육 신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수증 출력
- * 신청조회 및 이수증 발급 → 조회 → 이름 클릭 → 설문지 작성 및 전송 → 이수증 출력

2) 교육방법

- ① 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에 한해 개인별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을 위한 교육 ID, 비밀번호 발송(교육 시작 하루 전)
 - 화상회의 프로그램 별 사용방법 상이(‘Zoom’프로그램 기준으로 안내)
- ② 부여받은 교육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장 입장, 수강
- ③ 교육생 ID(‘소속_이름’) 및 카메라 화면 확인으로 수료여부 확인, 중도 이탈 시 미수료 처리

- * 출석 확인을 위해 시간당 최소 1회 화면 체크(불시에 진행)
- * 카메라 화면을 띄우지 않은 수강생은 미수료 처리
- * 하드웨어적 문제로 퇴실 된 경우 교육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재입장, 채팅방에 사유 작성
- * **변경사항 - 단체로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출석사진을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송해야 함.**

5 **수료기준 및 출석관리**

- 수료기준 : 교육시간 100% 출석
- 출석관리
 - 매 강의별 줌(Zoom)을 활용하여 수강여부 확인 후 결강 시 미수료 처리
 - 교육 분위기 저해, 교육질서 문란 행위 시 퇴교 조치 가능

6 **강의일정 : 입장시간 절대 준수**

- 2022년 하반기 교육 일정

월	일정	정 원	접 속	강의
9월	09.07.(수)	50명	13:30	14:00 ~ 18:00 (4시간)
	09.14.(수)	50명		
	09.21.(수)	50명		
	09.28.(수)	50명		
10월	10.05.(수)	50명		
	10.12.(수)	50명		
	10.19.(수)	50명		
	10.26.(수)	50명		
11월	11.02.(수)	50명		
	11.09.(수)	50명		
	11.16.(수)	50명		
	11.23.(수)	50명		
	11.30.(수)	50명		
12월	12.07(수)	50명		
	12.14.(수)	50명		
	12.21.(수)	50명		
	12.28.(수)	50명		

※ 인권교육 설치 및 실행 방법

- 안내문 4페이지(줌으로 원격교육 참여하기 방법), 9페이지(ZOOM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및 접속 방법 예시) 참고
-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Zoom 설치 및 실행 방법 시청 가능.
 - 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u3m6DZWriiNgg-vhzp-AWA>)
 -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검색 후 관련 영상 시청 가능.

※ 참고사항

- 시설(기관)집합 교육 한시적 허용
 - 스마트기기 1대 이상을 활용하되 수강자 전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기관)자체적으로 교육인원 결정 및 신청
 - 교육수료 인증방법 : 실시간 비대면교육 수강 중 교시별 증빙자료(사진) 제출
 - 예시 사진



※ 교육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줌(Zoom)으로 원격교육 참여하기 방법

줌(Zoom)으로 원격교육 참여하기

① 장비 준비하기

아래 구성 중 활용 가능하신 장비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추천순)

- * 스피커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 * 데스크탑은 카메라 기능(웹캠)을 추가 준비해야 합니다
- * 핸드폰은 글씨가 작게보이고, 교육 집중에 방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노트북+스피커이어폰(휴대전화용 이어폰도 가능)
- 노트북(내장 스피커사용)
- 데스크탑+웹캠+스피커이어폰
- 데스크탑+핸드폰+스피커이어폰
- 핸드폰+스피커이어폰

② 노트북 또는 휴대전화에 줌(Zoom) 앱 내려받기

- 노트북(또는 데스크탑)사용 : 크롬(chrome)브라우저 사용 권장 *
- ※ 교육 시작 전 참석 링크를 눌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 ※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뜨는 경우 실행 필요
- 핸드폰 사용 : 플레이스토어 > Zoom 앱 내려받기

③ 줌(Zoom) 교육실로 이동하기

- 홈페이지로 신청한 신청자에 한해, 교육 1일 전 문자와 이메일로 교육실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 드립니다
- 링크를 눌러 교육실로 이동 또는 줌 홈페이지 접속 <http://www.zoom.us/meetings>
- 회의참가 > 회의실 ID 입력 > 회의실 비밀번호 입력
- 컴퓨터 오디오 테스트 > 스피커 테스트 > 마이크테스트 > 닫기
- 대기실로 입장 > 교육담당자 승인 후 > 교육실 화면에 접근 가능

④ 교육 중

- 교육 중 교육생접속 화면을 캡처하여 출석확인을 합니다
- 강의 중에는 교육생들은 마이크를 ‘음소거’해 주시고
- 질문, 대답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음소거해제’후 발언 바랍니다
- 교육 중에는 ‘채팅’에 질문 또는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줌 사용법’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참고자료>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교육 비교

구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교육대상자	1. 노인복지시설, 2. 요양병원, 3. 종합병원, 4.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 무자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 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 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 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	연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교육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 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 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기관	지정된 교육기관 별도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방법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 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 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 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예상 질의 및 답변

[인권교육]

Q1.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①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관, ④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Q2.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등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소지하고 있는 시설 설치신고필증(증명서)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도 인정되나요?
A3.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Q4. 인권교육은 개인(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 신청할 수 있나요?
A4. 인터넷 교육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집합·방문 교육의 경우 개인이 아닌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기관별로 교육신청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대면 교육을 2시간(1시간 혹은 3시간)을 이수한 후에 부족한 시간을 인터넷 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나요?

A5. 현 시스템에서는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가 불가하므로,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Q6.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6. 해당 종사자가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퇴사하여 해당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권교육 실시 결과는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 소속된 종사자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인권교육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권교육의 경우 보다 넓은 개념인 '인권'에 대해 다루어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8.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A8.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1시간)을 분기마다(4회) 이수한 경우,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과 다르므로,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Q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A1. 기관장 등 기관의 책임자 분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인권 교육과 달리 교육기관이나 강사 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Q2.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인가요?

A2. 네,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포함되므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Q3. 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을 또 받아야 하나요?

A3.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매년 인권교육(4시간 이상)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Q4.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이 포함되어 이수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4. 네, 인정됩니다.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노인 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3, 3458)
- 재가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3519)

▶ 노인학대 예방 교육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3, 3458)

비대면 교육시 안내 사항

1.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1) ZOOM 어플리케이션 설치

- 교육 진행 전, ZOO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세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보낸 문자 링크를 클릭하여 ZOO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세요.

※ 링크를 클릭하여도 설치되지 않거나, 애플 스마트폰인 경우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일 경우(삼성, LG 등) : Play스토어 - 줌(zoom) 다운



- 애플 스마트폰일 경우 : Appstore - 줌(zoom) 다운



2) 와이파이 연결된 장소에서 듣기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ZOOM)을 활용하기에, 원활한 인터넷 환경에서 들어야지 끊김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3) 충전기를 연결하여 듣기

- 인권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에 스마트폰 이용할 시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꺼질 수 있습니다.

4) 출석체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얼굴을 계속 비추기)

- 출석 체크의 경우 상시 진행될 예정이며, 불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카메라에 얼굴이 비치지 않거나, 정지된 화면(다른 어플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이 지속되면 미수료 처리됩니다.

5) 교육 중

- 강의 중에는 교육생들은 마이크를 ‘음소거’해 주시고.
- 질문, 대답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음소거해제’후 발언 바랍니다.
- 교육 중에는 ‘채팅’에 질문 또는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 교육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